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Compliance Program Regulation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 운영규정

2025. 03. 31 제정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임직원들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준수와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을 위하여 지켜야 할 기본적인 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회사의 모든 업무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임직원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정거래자율준수”는 회사에 적용되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 규정 등에서 정한 요건을 자율적으로 충족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공정거래 자율준수프로그램(이하 “CP”)”은 자율준수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한 행동요소를 도출하고 그 실행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3. “공정거래 관련법령”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소비자기본법』 등 경쟁의 촉진과 공정거래질서의 유지를 목적으로 제정되는 제반 법령을 말한다.
4. “경쟁당국”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집행을 담당하는 정부기관으로 공정거래위원회를 말한다.
5.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운영을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6. “CP 전담부서”는 자율준수관리자의 지휘 아래 CP 업무를 주관하여 실행하는 부서를 말한다.
7. “사전업무 협의제도”는 제3자와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을 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공정거래 법규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말한다.
8. “CP 감사”라 함은 본 규정에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감사 담당자가 CP 전담부서 외의 다른 부서에 대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CP 운영규정 및 자율준수편람(이하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이라 한다) 위반 여부를 조사·점검하는 활동을 말한다.

제2장 조직구조 및 업무분장

제1절 최고경영자

- 제4조(최고경영자의 의무) ① 최고경영자는 CP가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고, CP를 기업 운영의 최우선 정책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 ② 최고경영자는 CP의 효과적 운영과 제도 개선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예산과 조직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 ③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법 위반, 자율준수 문화 저해 등 CP 목적에 반하는 행위에 대해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 ④ 최고경영자는 공정거래 자율준수 의지를 임직원에게 지속적으로 전달하고, 스스로 실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최고경영자의 권한) 최고경영자는 CP 운영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가진다.

1. 자율준수관리자를 이사회에 추천할 수 있다.
2. CP의 구축 및 운영을 위하여 예산과 자원을 배분할 수 있다.
3. CP 운영과 관련하여 임직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할 수 있다.

제2절 자율준수관리자

- 제6조(선임과 해임) ① 자율준수관리자의 선임 및 해임은 이사회에서 승인되어야 한다.
- ② 자율준수관리자의 결원 시 그 후임자는 전항의 이사회 승인을 받기 전까지 임시로 이 규정에 따른 자율준수관리자의 권한 및 의무를 가진다.

제7조(권한)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모든 권한과 책임을 최고경영자로부터 위임 받아 이를 독립적으로 행사한다.

1. 자율준수 실태에 대한 점검 및 조사권
2.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하거나 위반가능성이 있는 사항에 대한 개선, 시정요구권
3.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자료 및 정보의 제출요구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임한 권한

제8조(의무) 자율준수관리자의 의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
2. CP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의무

제9조(직무) 자율준수관리자는 CP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CP의 운영
2. CP 운영계획과 운영현황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 보고
3. 공정거래자율준수실태 감사 실시 및 결과에 대한 인사위원회에의 시정 요구

4. 기타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시정요구
5. 공정거래자율준수에 대한 임직원 교육을 반기당 2시간 이상 실시
6. 공정거래자율준수 행동강령의 제정 및 운영
7. 공정거래자율준수 활동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8. 경쟁당국 등과의 협조 및 지원
9. 공정거래 관련법령 준수를 위하여 필요한 동기부여 제도 운영
10. 기타 공정거래자율준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독립성 보장)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사회나 최고경영자에게 직접, 적시에 보고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준법지원 및 통제 업무를 독립적이고 실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회사 내 직급을 가진다.

③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 업무수행의 객관성과 독립성의 확보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가 본 조 제3항을 위반한 경우가 아닌 이상, 당해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유로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인사상의 불이익을 부과해서는 안 된다.

④ 자율준수관리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고, 업무수행 중 독립성을 유지해야 하며 업무수행행위에 대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⑤ 회사는 자율준수관리자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임직원은 자율준수관리자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나 정보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⑥ 회사는 본 규정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문제의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최대한 존중한다.

⑦ 자율준수관리자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조력을 구할 수 있다.

제3절 CP 운영조직

제11조(조직의 구성) 자율준수관리자는 원활한 CP의 운영을 위하여 자율준수관리자 직속의 CP 전담부서 조직을 구성하여야 한다.

제12조(CP 전담부서) CP전담부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1. 자율준수관리자 업무보좌
2. CP의 실행에 필요한 계획 작성, 자율준수관리자 보고 및 시행
3. CP의 실무적인 문제처리 및 CP 운영 효과성 평가
4. 공정거래 관련 법령과 연관된 사내업무에 대한 법률자문 등 지원활동
5.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정보수집 및 전파
6.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자율준수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주관
7.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및 배포
8. 공정거래 관련 반기 2회 이상 모니터링 및 점검

- 9.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리스크 식별 및 관리를 위한 위험성 평가 실시
- 10. CP에 관련된 문서체계 구축

제4절 자율준수협의회 등

제13조(설치 및 구성)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 추진 및 운영과 관련한 자문 및 협의 기구로 자율준수협의회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협의회 의장은 자율준수관리자가 한다.

③ 자율준수협의회 구성원은 사안에 따라 자율준수관리자가 지정할 수 있다.

제14조(역할) 자율준수협의회는 자율준수를 위한 중요사항에 관하여, 이를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권고하거나 자문한다.

제5절 임직원

제15조(의무) ① 모든 임직원은 공정거래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자율준수관리자, CP 전담부서 또는 법무팀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각 부서장(별도의 부서장이 없는 경우 팀장)은 소관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거래 관련법령

④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6조(신고의무 및 제보자 보호) ① 신고는 가장 신속하고 편리한 방법을 택하되, 인적사항과 위반내용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한다.

② 모든 임직원은 내부고발자 또는 보고자에게 불이익을 가하거나 그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③ 회사는 내부고발자 또는 보고자가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 보직변경 등 필요한 인사 조치를 한다.

④ 모든 임직원은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비밀을 지켜야 하며, 이를 누설한 경우에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⑤ 회사는 회사의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실을 발견하여 신고한 내부고발자 또는 보고자에 대하여는 비밀보장, 신분보장, 책임감면 등을 통해 제보자를 보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제3장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영

제17조(공정거래자율준수 의지천명) 최고경영자는 임직원 전원의 공정거래자율준수 촉구에 대한 의지를 최소 연 1회 천명한다.

제18조(자율준수편람)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자율준수를 위한 세부 지침인 자율

준수편람을 제작하여 배포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편람은 회사의 조직과 특성에 맞게 제작하여야 하며, 관계 법령과 규정 등의 변화에 따라 매년 반기마다 수정하고 보완해야 한다.

③ 자율준수편람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모든 임직원들이 알기 쉽고, 쉽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1. 브랜드 사이트 게시
2. 그룹웨어 게시
3. 직무별 분권화
4. 핸드북 배포

제19조(모니터링 제도)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 시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1. 법 위반 가능성이 큰 부문에 대한 자율준수실태 점검, 조사
2. 제1호의 점검, 조사 결과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시행
3. 관련부서에 대책 이행요구 및 이행점검

제20조(내부고발시스템)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제보하기 위한 절차 및 기준 등이 포함된 내부고발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설치된 내부고발시스템에 제보한 임직원이 타 부서의 보복, 차별, 인사상의 불이익 등을 받지 않도록 철저히 보호하여야 하며, 자율준수관리자 및 CP 전담부서는 제보 사실의 처리 목적 이외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임직원이 제보한 내용이 법 위반 예방에 기여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3조에 따른 포상 또는 적절한 포상금을 제공할 수 있다.

제21조(내부고발 조사담당자의 권한, 책임)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와 관련된 내부고발이 내부고발채널에 접수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독립성, 중립성, 객관성, 익명성을 보장될 수 있는 적합한 인원을 내부고발 조사담당자로 선임하여 조사절차에 착수하도록 한다.

1. 감사 또는 사외이사
2. CP 전담부서의 직원 중 CP 관련 2년 이상 경력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3. 사내 변호사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자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내부고발 조사담당자가 해당 제보건을 타인의 간섭 없이 독립적으로 조사하여 그 결과를 가감없이 보고할 수 있도록 충분한 권한 및 제반환경을 보장해 주어야 하며, 내부고발 조사로 인해 조사담당자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내부고발 조사담당자는 조사 착수 후 적절한 시간내에 해당 내부제보의 내용이 사실인지 여부를 객관적·중립적인 입장에서 공정하게 조사한 후 당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내부고발 조사담당자는 조사 중은 물론이고 조사 이후에도 내부고발자의 신원 및 해당 내부고발사실을 보고라인에 있는 임직원 이외의 자에게 누설·공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CP 감사) ① CP 전담부서는 공정거래 리스크 평가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부문을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CP 감사를 실시하며, 그 감사 결과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수감 부서는 CP 전담부서의 CP 감사 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관리자는 감사결과에 대해서 연 1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며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적절한 시정조치를 취해야 한다.

④ CP 감사 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1. 감사 또는 사외이사
2. CP 전담부서의 직원 중 CP 관련 2년 이상 경력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자
3. 사내 변호사
4. 기타 자율준수관리자로부터 적격성 판단을 받은 자

제23조(내부고발 조사 및 CP 감사에 따른 후속 조치) ① CP 전담부서는 제19조의 내부고발 조사 및 제20조의 CP 감사 결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에 위반되거나 위반될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된 경우, 즉시 관련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해당 임직원에게 경고 및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으며, 해당 부서장에게 적절한 시정 및 재발방지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해당 부서장은 지체 없이 대책 및 조치를 강구하고, 그 실시 보고서를 자율준수관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경우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법령에 대한 위반 정도가 명백하고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⑤ 전항의 경우 인사위원회는 위반에 관여한 직원 및 해당 직원의 부서장 등에 대해서는 ‘취업규칙’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그 내용을 자율준수관리자에게 통지하며, 자율준수관리자는 그 내용을 최고경영자 및 이사회에 보고한다.

⑥ CP 전담부서는 제3항의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사항을 교육 내용에 반영한다.

제24조(정보 및 자료의 전달과 관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신의 CP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정보 및 자료를 해당 부서 임직원에게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출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율준수관리자의 요청을 받은 임직원은 신속하고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 정보 및 업무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형성된 공정거래 관련 정보 및 업무 자료는 3년 이상 보관한다.

제25조(CP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① CP 전담부서는 임직원들이 공정거래 관련 법령을 이해할 수 있도록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은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야 한다.

1.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 가능성이 높은 영업, 경영지원, 경영기획, 구매물류본부 교육
 2. 최고경영자를 포함한 임원에 대한 교육
 3.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
 4. 기타 직원들의 공정거래 준수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
- ② 전항의 교육내용은 자율준수 규정의 주요내용이 변경되거나, 공정거래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라 임직원이 인지하여야 할 사항 등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들로 정한다.
- ③ 의무 수강부서로 선정된 부서의 임직원들은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시 사유를 CP 전담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 교육 미이수자에 대한 보수교육 및 공정거래 관련 법령 위반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월 주기로 확인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⑤ CP 전담부서는 효과적인 교육을 위해 회사 임직원 대상 설문 또는 VOC를 통해 교육 효과성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도출된 결과는 차기 교육에 반영한다.
- ⑥ 그 외 CP교육에 관련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26조(CP 교육강사 선정 기준) 자율준수관리자는 사내외 CP 교육강사 선정 시 전문지식, 업무경험 및 업무경력을 반영하여, 다음 각 호에 어느 하나라도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구매, 홍보, 영업 등의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2. 법무법인, 전문기관 등에 공정거래 관련 업무 경력 2년 이상인 자
3. 컴플라이언스 관련 전문 자격증을 보유한 자
4. 이상 위에 준하는 지식, 경험, 경력을 보유한 자

제27조(사전업무 협의제도) ① 모든 임직원은 제3자와 거래를 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반드시 CP 전담부서 및 자율준수관리자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전업무 협의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1. 법무관리프로세스: 계약 체결 전, 법무관리프로세스를 통해 계약 내용과 공정거래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사전적으로 점검 받아야 한다.
2. 자율준수협의회: 공정거래 관련법에 대한 컴플라이언스 이슈를 자율준수협의회에 내용을 공유하고, 자문을 얻을 수 있다.

③ 임직원이 공정거래 관련 사전협의를 요청할 경우 CP 전담부서는 내용을 검토하여 해당 임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필요 시 관련 정부부처 또는 외부 전문가의 자문을 구한 후 결과를 통보할 수 있다.

제28조(공정거래관련 법령 위반 임직원에 대한 제재)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사항에 대하여 해당 임직원 또는 관련 부서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공정거래 관련법령 준수여부 점검 결과 적발된 공정거래 관련법령 위반자에 대해서는 위반 정도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인사담당 부서 및 징계위원회에 요구할 수 있다.

제29조(임직원에 대한 포상)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 활동을 성실히 이행한 임직원 또는 팀(부서)

을 평가하여, 직접 포상하거나 인사 담당 부서에 포상을 추천할 수 있다.

1. CP 운영 및 참여 우수 임직원 및 팀(부서)
2. 교육이수 우수자
3. CP 전담부서 임직원
4. 내부고발자
5. CP 추진 성과 우수자 등 CP 문화 활성화 기여자

② 포상 기준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자율준수관리자의 판단에 따라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다.

제30조(문서관리) ① 자율준수에 관한 기본 문서들은 자율준수관리자의 책임 아래 분류되고 보관되어야 한다.

② 전항의 문서들 중 법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문서는 추후 증빙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작성하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③ 자율준수 활동에 관한 모든 문서는 정확하게 기록되고 최신의 정보를 담아야 한다.

제31조(CP 운영 효과성 평가) ① 자율준수관리자는 CP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를 반기별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프로그램 운영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자율준수관리자는 연 2회 이상 CP 운영의 성과(효과성)를 평가한다.

3. 자율준수관리자는 전항의 평가 결과를 연 2회 이상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한다.

4. 운영 효과성 평가는 필요에 따라 외부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32조(공시) 자율준수관리자는 자율준수프로그램의 운용상황을 증권거래소 또는 기타 회사가 정하는 방식 등에 따라 공시하고 회사 홈페이지에 게재할 수 있다.

제33조(관할 당국과의 관계) 자율준수관리자는 관할 당국인 공정거래위원회와 정보교환, 의사소통 등을 원활하게 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34조(위임) 자율준수관리자는 이 규정의 효율적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세부 사항을 별도로 제정, 운영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